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

2023. 2. 2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│. 추진 배경1
□. 피해 현황 및 원인 진단 2
Ⅲ. 정책 추진방향5
□ ∨. 세부 추진과제6
1. 전세사기 피해 예방6
2. 전세사기 피해 지원12
3. 전세사기 단속・처벌 강화 14
∨. 향후 추진계획16

│. 추진 배경

□ '22년 정부 출범 직후 전세사기 피해 방지 노력에 본격 착수

○ 전세사기 특별단속('22.7~'23.1), 「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」('22.9) 등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 중

구분	주요 과제	조치 현황
피해	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	법제처 심사중, '23.2월 국회제출
예방	■ 국세징수법, 국세기본법 개정	개정 완료('22.12)
-1411	■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	2곳 운영중(서울 강서 '22.9, 인천 부평 '23.1)
피해 지원	■ 긴급거처 지원, 저리 대출	진행중(긴급거처 '22.10~, 저리대출 '23.1~)
**112	■ 피해 임차인 설명회	2회 실시('22.12.22, '23.1.10)
단속	■ 국토부·경찰청 특별단속	1차 단속 완료('22.7~'23.1)
처벌	■ 중개사·감평사 등 처벌 강화	개정안 발의 완료('22.12)

□ 다만, 집값 급등기에 구조화된 조직적 전세사기 대응 애로

- 집값 급등, 반환보증 제도 악용, 전문 자격사 사기 가담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소위 '빌라왕', '빌라의 신' 등 대규모 피해* 발생
 - * (빌라왕 사기 수법)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무자력자를 바지 사장으로 활용하여 신축빌라를 대규모 매집, 높은 전세가로 보증금 수령 후 잠적 또는 고의 부도
- (임차인) 매매·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·신혼부부 등의 주거 수요가 아파트 대비 저렴한 신축 빌라로 전환
- (임대인) 집값 안정기에 전세가율 100%*까지 가입을 허용한 HUG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
 - *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100%를 의미
- ** (연립·다세대 보증가입 전세가율 기준) ('13.9) 70% → ('14.2) 80% → ('17.2) 100%
- (자격사) 일부 중개사·감평사 등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
- ◈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대응 한계, 전세피해를 뿌리뽑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

Ⅱ. 피해 현황 및 원인 진단

1 피해 현황

□ (보증사고)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, 미끼상품이 된 보증보험

- o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약 1.2조원으로,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
- 전세가율 기준 완화로 고위험주택 가입 급증, 전세가격 상승으로 갭투자가 활발해진 '20년 이후 계약분의 만기 도래로 피해 급증

연도별 보증사고액 현황 (HUG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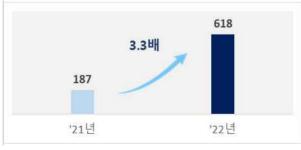
보증가입 현황 (HUG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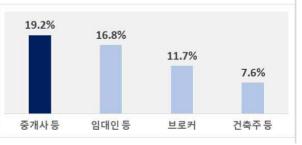
□ (단속) 사기의 조직화·지능화, 믿었던 중개사·감평사도 사기 가담

- 특별단속 등의 영향으로 전세사기 범죄는 3배 이상 증가
- 임대인은 물론 **중개사, 감평사**도 **전세사기에 가담**한 사례 **다수**

<u>전세사기 검거 현황(경찰청, 건)</u>



전세사기 주요 피의자 현황(경찰청)



□ (피해자 목소리) 전 재산인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산 넘어 산

-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로, 보증금 회수까지 장시간 소요
- "빌라왕 사망에도 보증금 당장 못줘, 믿었던 보증의 배신"('22.12, ㅇㅇ일보)
- "보증금도 못받고, **금리 상승**으로 하루하루 **이자내기**도 **버거워"**(민간자문단)

위험요인 진단 2

전세사기 위험 발생 3대 요인

- ◇ 매매가의 100% 전세까지 보증금을 100%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
- ◇ 시세·세금체납·보증사고 이력 확인 불가 등 계약단계별 깜깜이 정보
- ◇ 공인중개사·감정평가사 등 공인들이 오히려 위법행위 적극 가담
- ◈ 특별단속 결과, 빌라왕 등 피해는 무자본 갭투자가 대표적 사기수법 전세사기 관계도



대표적 사기 행태

- 조직적 공모로 임차인 유인
- **②** 100% 반환보증을 미끼로 계약 종용
- **③** 임대인 명의변경 등으로 고의부도

● 조직적 공모로 임차인 유인

- ▶ (분양대행사) 이사비 지원 등 <u>과장·허위 광고로</u> 신축 빌라 홍보
- ▶ (브로커 중개사) 리베이트 수익을 위해 신축 빌라로 임차인 모집

2 반환보증을 미끼로 깡통계약 체결

- ▶ (임차인) 시세·임대인 정보 부족으로 주저 → 중개사 믿고 계약
- ▶ (중개사) 반환보증 제도를 미끼로 전세사기 위험 계약 종용
- ▶ (감평사) 보증제도를 악용, 부풀려진 시세 제공으로 사기에 가담

③ 명의변경, 선순위 근저당 등 피해 현실화

- ▶ (명의변경) 바지사장으로 임대인 명의변경, 임대인 잠적 또는 사망
- ▶ (근저당. 세금체납) 확정일자 직후 근저당 설정, 몰랐던 세금체납
- ▶ (보증가입 거절) 계약체결 후 악성임대인으로 밝혀져 보증가입 거절

전세사기 구조 및 대응방안

◆ 전세사기 공모	문제점	대응
• 신축후 미분양 전축주 · 깡통전세 중개사 · 이차인 모집 · 장치 · 건물통매입 · 동시진행모의 컨설팅 • 바지임대인섭외	사전 모의 단계로 관리, 수사, 단속에 어려움	 전세사기 의심거래 기획조사 위험 매물 사전 모니터링
→ 무자본 갭투자, 동시진행		
③ 명의 이전, 전세계약 승계 분양대행 건설팅 바지 임대인	① 중개사 역할미흡 - 위험 축소, 은폐 ② 위험계약 체결 - 시세 정보 부족 - 임대인 정보 부족 3 명의 이전 - 임차인 인지 불가 ④ 선순위 근저당	 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 이력 확대공개 · 관리 계약 전 정보 확대 시세, 세금 체납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전세사기 방지 특약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
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		
보증가입 단계 보증사고 발생 임차인 임차인 의차인 의치인 보증 가입 보증 가입 보증금 연 보증금 손실, 반환 지연 압류, 경매 보증회사 보증회사 보증회사 바지 임대인	① 시세 부풀리기 ② 위험 매물 보증 - 전세가율 100% - 전세사기 수단 악용 ③ 절차 지연, 미비 ④ 보증금 손실	● 보증제도 악용 방지 - 전세가율 하향 - 감평법인 제한 - 감정가 후순위 인정 ● 절차 마련, 간소화 ● 전세피해 지원센터 - 대출, 주거, 법률 지원

목표

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

추진방안	문제점	대응 방안
	• 전세금 반환보증 악용	보증가입 전세가율 90% 하향 감정평가 시세 부풀리기 방지
피 해 에 방	• 깜깜이 정보	 계약전, 안심전세앱으로 사전진단 계약후,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, 매매 시 임차인 고지 특약
	• 공인중개사 역할 미흡	전세사기 위험 확인 · 설명 중개사 보증사고 이력 공개
	미추이되 비디	지기대추 이것 이렇 데힘 시선

피 해 지 원

- 대출이자 부담
- 긴급거처 지원 미흡
- 법률서비스 미흡

• 저리대출 요건 완화, 대환 신설

- 긴급주거지원 확대
-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

단 속 처 벌

- 사전관리 미흡
- 자격사 전세사기 가담
- 특별단속 실시

-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
- 자격사 원스트라이크 아웃
- 특별단속 연장

Ⅳ. 세부 추진과제

1 전세사기 피해 예방

1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무자본 갭투자 근절

[1] 전세가율 90%까지만 보증하되,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

- □ (현행)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100%(전세가율 100%)까지 보증가입 허용→ 악성 임대인이 보증을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
 - * 속칭 '빌라왕'의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**평균 전세가율**은 **98%**(보증금≒매매시세)

【HUG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 변경 연혁】

구 분	′13.9	′14.2	′15.5	′17.2
아파트	90%	90%	100%	100%
연립·다세대	70%	80%	80%	100%

- 임대인·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%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 하여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, 임차인은 위험계약 노출
- □ (개선)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% → 90%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, 악성 임대인을 시장에서 퇴출(HUG 내규개정 2월, 시행 5월*)
 - *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'24.1월부터 적용·시행
 - HF·SGI도 동일하게 전세가율 인하(100→90%) 추진
 - 한편, 더 많은 임차인에게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금 출자·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을 검토하고,
 -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*('23.2)
 - * (대상) 연소득 4천만원 이하→ 5천만원 이하, (할인폭) 50% → 60%

[2]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을 방지

□ (현행)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를 최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, 일부 감평사들이 고의적인 시세 부풀리기로 전세사기에 가담 □ (개선) 감정가는 공시가・실거래가 없는 경우만 적용('23.2, HUG 내규)
 현행
 ●감정평가
 ● ②공시가격 × 140%
 → ◎실거래가 등

 개선안
 ●공시가격 140%
 →
 ●실거래가
 →
 ●감정평가(신축빌라는 90%)

- 짬짜미 방지*를 위해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**(기 시행)하고,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단축(6개월→ 3개월)
 - * 등록임대 의무보증에도 감정가 후순위, 협회 추천제 시행('23.6, 민임법 시행령 등)
 - ** 전세사기 의심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사기에 가담한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

(3)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

- □ (현행) 등록임대는 임대인이 보증에 의무가입해야 하므로, 보증금
 뗴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, 실제 미가입 사례 다수
 -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제도를 악용한 무자본 갭투자 의심*
 - * (임대보증 발급 세대수별 부채비율) 3세대 이하 79.6% ↔ 300세대 이상 95.4%
- □ (개선) 의무보증을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
 - ① (등록 단계 관리) 임차인 거주중인 집은 '선보증 후등록'으로 전환,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('23.2, 민임법 개정안 발의)
 - 다만, 공실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보증가입이
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, 등록 이후 보증가입을 허용하되,
 -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*('23.6, 렌트홈 시스템 개선)하고,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 추진('23.6, 민임법 시행령 등)
 - * (예시) 임대차계약 신고시 지자체에서 보증가입 여부 확인, 미가입 시 문자 등 통보
 - ② (미가입 등록제한) 보증 미가입으로 주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('23.2, 민임법 개정안 발의)
 - (개선안 마련) 등록임대 보증 가입기준을 강화*하되, 보증 의무가입, 임대기간(10년) 중 시세변동 가능성 등 고려, 개선방안 마련("23.7)
 - * 보증의무 전면 시행('23.8)에 맞춰 전세가율 하향,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등 검토

2 계약 단계별로 전세피해 자가진단 정보제공 강화

[1] 계약 전,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약 정보 확인

- □ (현행) 청년·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연립·다세대, 특히 신축 빌라는 시세정보*가 없어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판단 곤란
 - * (현행) 50세대 이상 단지 아파트, 100세대 이상 연립·다세대 시세 제공(부동산원)
 - 보증사고 전력이 있는 악성임대인의 집은 보증가입이 불가하나, 임차인이 계약 전에 알 수 없고, 세금체납 여부 확인도 곤란
- □ (개선)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HUG 안심전세App을 통해 ¹ 시세정보, ² 악성임대인 여부, ³ 세금체납 정보 등을 사전 제공
 - (시세) 연립・다세대, 소형 단지 아파트의 시세는 물론 전세가율, 경매낙찰가율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전에 위험 진단*
 - * (안내문 예시) 해당 주택은 전세금 2억원 이하로 계약을 권유드립니다(전세가율 기준)
 - ('23.2월)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수도권 내 주택 정보 제공
 - ('23.4월) 수도권 내 준공 전 빌라의 추정시세*까지 확대 제공
 - * 준공 전 빌라는 시세가 없어 피해 우려→준공 1개월 전 추정시세,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
 - ('23.7월)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제공 범위 확대
 - ② (악성임대인)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임대인과 계약 하지 않도록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을 제공*
 - * (**1단계**, '23.2) 임대인 직접 제시 → (**2단계**, '23.4) 임대인 동의 후 임차인 휴대폰 송출 → (**3단계**, '23.7)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제시(법률 개정 필요)
 - 또한, LH 전세임대 공급 시 악성 임대인의 집과 계약하지 않도록 HUG 보증사고 이력 정보를 확인 후 공급 추진('23.2)
 - **③ (세금체납 정보)** 국세청(홈택스)과 연계하여 납세증명서 확인('23.7)
 - ◆ 안심전세앱으로 시세, 악성 임대인 정보 등 확인 → 계약 체결 전보증가입 가능여부 사전 진단 → 임차인 보증금 보호 안전판 강화

HUG 안심전세앱 주요 기능

App 1.0('23.2.2) 주요 기능

□ 정확한 시세 정보 제공 및 보증가입 가능성 안내





②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

전세 보증 금지 조회 결과



위 대상자는 전세보증 가입 금지 임대인입니다.

(사유: HUG 보증채무 존재)

- 2023.1.31. 00:00 기준이며 실시간 변동 됩니다.
- 보증 가입 가능 임대인이라도 보증 요건에 따라 보증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.

악성임대인 등록 이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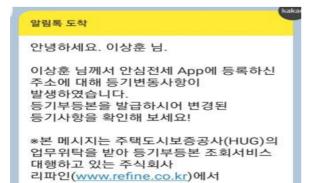
등독일	에세일	보증급시 사유	
2022-11-30	미해제	악성임대인 (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 무자)등록	

보증금지 이력



등속본	에세븐	보증급시 시유	
2022-11-21	미해제	HUG 보증 사고 접수	
2020-05-05	2021-05-05	서류 위변조 등 보증거래 부적절	
2018-07-03	2020-01-12	HUG 보증 채무 존재	

③ 등기부 변동알림(집주인 변경, 근저당권 설정 등) 알림



발송되었습니다.



[2] 계약 후, 임차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 사전 정보 제공

- □ (현행) 임차인 보증금의 우선변제권* 확보 전,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우선 보호
 - * ①확정일자(계약서 작성 후 신고 가능), ②이사, ③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익일 0시
 - 또한,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알려
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 우려
- □ (개선)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¹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장치 마련, ²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고지 특약 반영
 - ① (선순위 담보대출 방지)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'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' 시범사업*을 시행 중(1.30~, 우리은행), 시중은행으로 확대('23.4)
 - * (종전) 대출심사 시 우선변제권이 확보(전입신고 익일 0시) 된 보증금만 우선 차감 (개선) 확정일자 신고된 보증금(RTMS에서 확인)은 우선 차감 후 대출 실행
 - 우선변제권 확보 전,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게 하고, 위반 시 계약해지토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* 특약 반영('23.2)
 - *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기 개정('22.11), 금번에는 등록 공인중개사의 97%가 가입된 중개사협회의 전산시스템 계약서(일명 한방 계약서)를 개정
 - ② (매매계약 임차인 고지)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,
 - 양수인(신규 임대인)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특약에 반영*('23.2)
 - * 공인중개사협회 전산시스템 계약서 양식에 반영

3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

□ (현행) 부동산 거래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나,

- 그간 **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**으로 **대응**한 측면도 있고, **일부**는 직접 **사기에 가담***
 - *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, 검거인원 1,941명 중 중개사(보조원 포함) 373명(19.2%)
- □ (개선) 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, ¹입대인 정보 확인, ²전세사기 위험 설명 및 ³이력 공개 등 책임 강화
 - ① (임대인 신용정보 확인) 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(세금・이자체납 등)를 직접 확인(임대인 동의 필요)할 수 있도록 개선*(′23.4)
 - * 중개사협회 시스템(한방)과 NICE 신용정보사 시스템 연계('22.12월 MOU 기 체결)
 -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 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('23.6, 중개사법 개정 추진)
 - ② (전세사기 위험 확인) 전세사기 방지 특약,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* 등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·설명하고,
 - * 다가구주택은 1개 등기에 다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, 확정일자 순위 확인 필요
 - 전세가율 확인, 보증가입 안내도 의무화('23.4, 중개사법 시행규칙*)
 - *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에 확인사항을 상세히 표기(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)

【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개정(안) 】

주요 확인사항	중개사		임차인 확인
•전입세대 열람내역	[](서류 확인)	[]미확인	[]
·확정일자 부여 현황	[](서류 확인)	[]미확인	[]
·임대인 납세증명서	[](임대인 제시)	[]임대인 거부	[]
•전세금 반환보증 가입	[](임차인 안내)	[](미안내)	[]

- ③ (상세이력 공개·관리)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 이력 등을 추가 공개*('23.4, 안심전세App 연계)
 - * (현행) 현재 영업상태(영업중, 업무정지, 휴업) 및 소속 중개보조원 등 공개 (개선) 최초 등록일부터 사무소 이동이력 및 사무소별 영업정지·휴업기간 등 공개
 - HUG의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를 DB로 관리하고, 사고 중개사 전수조사 및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에 활용
 - 중개사협회 차원의 자정활동 강화, 윤리교육 확대 등도 추진

2 전세사기 피해 지원

사 례

✓ 임차인 설명회, 민간자문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방안 마련
→ ¹ 대출, ² 긴급주거 개선, ² 청약 불이익 해소, ³ 법률지원 확대

[1] [금융]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대출 대환 신설 및 요건 완화

- □ (현행)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초저리 자금대출* 지원 중('23.1~)이나, 지원대상이 제한적
 - * (한도) 가구당 1.6억, (금리) 연 1~2%대
 - **대항력 유지** 등을 위해 **불가피**하게 **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**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**대출연장** 시 **높은 이자비용 부담** 발생
- □ (개선) 기금 활용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*을 완화하고, 대출 한도*를 늘려 피해 임차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('23.3, 기금운용계획 변경)
 - * (보증금 요건) 2억 → 3억원 / (대출액 한도) 가구당 1.6억 → 2.4억원
 -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임차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*(*23.5)
 - * (보증금 요건) 3억원 / (대출액 한도) 가구당 2.4억원 / (금리) 1~2% 대

(2) (주거) 긴급거처,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입주 지원

- □ (현행) 퇴거 등 주거불안 임차인을 위해 긴급거처*를 제공 중이나,
 물량 부족, 입주 지연 및 관리 소홀 등 충분한 지원 미흡
 - * '23.1월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, LH 긴급지원주택 200호 확보
- □ (개선) 입주를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등을 추가 확보하고,
 - * 상반기 중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 500호 이상 확보, 수요에 부족하지 않게 추가 확보
 - 신속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지원체계* 정비
 - * (LH·지방공사) 임대주택 제공, (HUG) 전세피해자 확인, (지자체) 입주자 선정·배정
 - 입주 전 사전점검·수시 유지보수 등을 통해 불편 최소화

(3) [청약]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

- □ (현행)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무주택 인정기간 소멸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
 - * 현재 공시가격 1.3억(지방 0.8억) 이하 & 60m² 이하 소형·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
- □ (개선) 낙찰주택이 공시가격 3억(지방 1.5억) 이하 & 전용면적 85㎡이하인 경우,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('23.5, 주택공급규칙)
 - * (예시) 무주택 5년 → 낙찰주택 3년 보유 → 낙찰주택 매도 후 청약시 무주택 2년 └→ (현행) 2년만 인정 → (개선)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10년(5+3+2년) 인정

(4) (법률)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고도화

- □ (현행)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기간이 소요 되고, 조치 필요사항 파악이 어려워 법률상담 수요가 다수이나,
 - ㅇ 법률상담 창구가 분산되어 피해자 접근성이 낮은 실정
- □ (개선) 국토부-법무부 합동「법률지원 TF」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, 법률지원 서비스도 고도화
 - ① (상속대위등기 생략)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 및 송무선례 기 개선*(1.11)
 - * 상속대위등기 시 임차인이 납부하는 취득세도 절감(공시가 2억원인 경우 약 600만원)
 - ② (임차권 등기 간소화)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개정('23.2월 국회 제출)
 - * (현행) 등기명령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나, 임대인 소재파악 곤란시 등기 지연
 - ③ (원스톱 법률지원)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·변호사협회· 법률홈닥터·마을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의 상담 기회를 확대
 - * 임차인이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상담 접수, 전문 법조인 배정 후 법률상담 등 진행
 - ④ (전세피해 지원센터 보강) 센터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HUG 인력 지원을 검토하고,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

3 전세사기 단속·처벌 강화

(1)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기획조사 연중 실시

- □ (현행) 그간 전세피해 발생 후 사후적 단속·처벌에 집중→단기간주택 대량 매집자 등 의심거래에 대한 사전 관리는 미흡
- □ (개선) 단기간 내 주택 다량·집중 매집, 동시진행·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('23.1~, 국토부)
 -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,
 그 외 지역 및 신규 거래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연중 조사 실시

【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지역 기획조사 개요(안)】

구 분	내 용
조사대상	· '20.1월 ~ '22.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, 오피스텔, 아파트 등 거래 건
포자네공	* 의심거래가 다수 집중된 지역(약 30개 동)의 다수거래자 거래건(약 2천건)을 조사
의심거래 선별기준	·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·매도 · 전세가율 100% 이상 주택 대량 매입 ·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·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
조사기간	· '23.1월 ~ '23.5월

- 전세사기 의심사례*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, 위법사항 처벌
 - * 공인중개사법 위반,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, 명의신탁, 대출규정 위반 등을 조사

[2]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·중개 퇴출

- □ (현행)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*가 대출이자 지원 등 허위·과장 광고를 통해 임차인을 현혹하고 있으나, 관리 시스템 미흡
 - * 분양대행사가 분양과 전세계약을 동시 중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
- □ (개선)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,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('23.1~6월), 위법사항 매월 수사* 의뢰
 - *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 시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
(3)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·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□ (현행) 공인중개사·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 다수 □ (개선)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・감평사 전수 조사* 실시('23.2~), 자격정지 등 엄중 처분,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* HUG 보증사고 계약 중개사 및 시세 제공 감평사를 국토부·지자체 등을 통해 조사, 의심사례 공유 등을 위해 지자체, 지역 중개사 및 경찰 등과 정례협의회도 개최 ① (중개사)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(자격취소) 요건* 확대, **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**** 도입 추진('23.6 중개사법 개정 추진) * (현행) 직무위반으로 **징역형** 선고시 자격취소 → (강화) **금고형(집유 포함**) 선고시 취소 ** (현행) 상한 없음 → (개선 예시) 중개사 인원만큼 채용(1인 중개사는 3인까지 허용) ② (감평사)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* ('23.6, 감평사법 개정 추진) * (현행) **금고형**(집유 포함) **2회** 처분 시 자격취소 → (강화) **1회** 처분 시 취소 (4)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전세사기까지 관리 □ (**연행)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**(국토부)를 운영 중이나, 그간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,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한 관리는 미흡* * 전세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·조치 요구 권한이 없어 경찰·지자체 등에 전달 역할 □ (개선) 중개사법, 거래신고법 등 위반 건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업무범위 확대('23.2, 중개사법 개정안 발의) ○ 법률 개정 이전에도 경찰·지자체 등을 통해 위법행위 수사·처분 (5)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6개월 연장 □ (현행) 경찰청·국토부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('22.7~'23.1월)을 실시하여 6개월 동안 618건, 1,941명을 검거하고 168명 구속

* 대검·경찰청·국토부 전담부서 간 협의체 구축, 7대 거점 검찰청-시경·도경 협의체 운영

□ (개선) 컨설팅 업체, 전세사기 배후 세력 등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

단속을 6개월 연장하고, 검찰·경찰·국토부 협력*도 강화

∨. 향후 계획

- □ (정부 후속조치) 안심전세App 기능 확대, 보증제도 악용방지, 중개사 확인·설명 의무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
- □ (국회 입법 협의)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국회 계류·발의 예정인 「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」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 적극 협의
 - 현재 6대 법률 중 10개 법안 旣 발의, 4개 법안 추가 발의 예정
 【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 주요내용】

법안명	주요내용	현황
● 주택임대차보호법	•임대인 세금체납·선순위 권리관계 제시 의무화 •임차권 등기 간소화(송달 전 등기 가능)	법제처 심사중 ('23.2월 국회제출)
② 주택도시기금법	•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	'21.9월 등 발의
②-1 기금법	•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및 심의위 설치	'22.12월 발의
❸ 민간임대주택법	•나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	'21.5월 발의
③-1 민임법	• 先보증, 後등록, 보증미가입자 추가등록 제한	'23.2월 발의 예정
③-2 민임법	·세금체납 시 임대주택 등록 거부	'23.1월 발의
③-3 민임법	•전세사기 가담 시 등록말소, 추가등록 제한	'22.12.12 발의
④ 공인중개사법	·세금체납·권리관계 확인 권한 설명을 의무화·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제재 강화·전세사기 신고 중개사 포상금 지급 확대	'22.12.15 발의
④-1 중개사법	· 중개사 요청 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	'22.12.12 발의
④-2 중개사법	•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확대	'23.2월 발의 예정
④-3 중개사법	·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 확대(전세사기 등)	'23.2월 발의 예정
④-4 중개사법	·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	'21.3월 발의
6 감정평가사법	•전세사기 가담 감평사 제재 강화	'22.12.15 발의
③ 지방세징수법	•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세금 열람 허용	'22.10월 발의

- □ (수사·처벌)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되도록 임대인·중개사는 물론 분양대행 컨설팅 등 배후세력까지 엄중 처벌
 -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련자 혐의입증에 역량 집중, 매월 의심 사례를 정기 제공하는 등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

추진과제 조치 계획

추진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	소관부서				
I. 전세사기 피해 예방	I. 전세사기 피해 예방						
1.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무자본	: 갭투자 근절						
(1) 전세가율 90% 보증, 저소득층 .	보증료 할인 확대						
■ 보증가입 전세가율 하향	HUG 내규 등 개정	'23.2	주택기금과				
■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	HUG 내규 개정	'23.2	주택기금과				
(2)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	단						
■ 시세 산정 기준 조정	HUG 내규 개정	'23.2	주택기금과				
■ 감정평가 유효기간 단축	HUG 내규 개정	'23.2	주택기금과				
(3) 등록임대 의무 임대보증 관리 경	강화						
■ 선보증 후등록	민임법 개정안 발의	'23.2	민간임대정책과				
■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 통보	렌트홈 시스템 개선	'23.6	민간임대정책과				
■ 계약해지 및 위약금 지급	민임법 시행령 등 개정	'23.6	민간임대정책과				
■ 미가입 등록제한	민임법 개정안 발의	'23.2	민간임대정책과				
■ 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	개선방안 마련	'23.7	민간임대정책과				
2. 계약단계별 전세사기 전세피해 자가진단 정보제공 강화							
(1)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	약 정보 확인						
■ 시세 등 정보 제공	안심전세App	'23.2~	주택기금과				
■ 악성임대인 이력 공개	안심전세App	'23.2~	주택기금과				
■ 납세증명서 확인	국세청 시스템 연계	'23.7	주택기금과				
(2)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 사	전 정보 제공						
■ 대출 시범사업 확대	금융권 MOU 체결	'23.4	주택임차인보호과				
■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	중개사협회 계약서 개정	'23.2	부동산개발산업과				
■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	중개사협회 계약서 개정	'23.2	부동산개발산업과				
3.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							
■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	시스템 개선	'23.4	부동산개발산업과				
■ 중개사 요청시 임대인 정보제공	중개사법 개정 추진	'23.6	부동산개발산업과				
■ 전세사기 위험 확인	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	'23.4	부동산개발산업과				
■ 상세이력 공개·관리	안심전세App 연계 등	'23.4	부동산개발산업과				

추진과제	조치사항	추진일정	소관부서				
ш. 전세사기 피해 지원	Ⅱ. 전세사기 피해 지원						
(1) 저리대출 대환 신설 및 요건 완	화						
■ 저리대출 요건 완화	기금운용계획 변경	'23.3	주택기금과				
■ 저리대출 대환 상품 신설	HF, SGI 내규 개정	'23.5	주택기금과				
(2) 긴급거처,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	입주 지원						
■ 공공임대 추가 확보	-	계속	주거 복 지지원과				
■ 지원체계 정비	업무협약 체결	'23.2	주거 복 지지원과				
(3) 전셋집 낙찰 임차인 지원							
■ 청약 무주택 자격 개선	주택공급규칙 개정	'23.5	주택기금과				
(4)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정비							
■ 상속대위등기 생략	법원 등기·송무선례 마련	완료	주택임차인보호과				
■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	주임법 개정안 발의	'23.2	주택임차인보호과				
■ 원스톱 법률지원	기관 연계	'23.2	주택임차인보호과				
皿. 전세사기 단속・처벌 강화							
(1) 기획조사	기획조사	진행중	부동산소비자보호 기획단				
(2) 불법 광고 사전 모니터링	모니터링	계속	부동산소비자보호 기획단				
(3)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·감평사 처	벌 강화						
■ 의심 중개사·감평사 전수조사	전수조사	'23.2~	부동산개발산업과 부동산평가과				
■ 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	중개사법 개정 추진	'23.6	부동 산개발산업과				
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	중개사법 개정 추진	'23.6	부 동 산개발산업과				
■ 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	감평사법 개정 추진	'23.6	부동산평가과				
(4)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 확대	중개사법 개정안 발의	'23.2	부동산소비자보호 기획단				
(5) 전세사기 수사・단속	특별단속 연장 등	계속	부동산소비자보호 기획단				